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1, No. 119, pp.1-34
<https://doi.org/10.29212/mh.2021..119.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유엔묘지에서 재한 유엔기념묘지로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 1955~1960년을 중심으로 -

이정선*

1. 머리말
2. 유엔묘지에서 재한 유엔기념묘지로의 변천과정
3. 재한 유엔기념묘지의 탄생
4. 맺음말

1. 머리말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한 2020년에 이어 2021년은 22개¹⁾ 유엔참전국 중 11개국의 전사자들이 안장된 재한 유엔기념공원

* 도쿄대학교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박사과정, 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귀중한 조언을 해 주신 네 분의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2018년 독일이 의료지원국으로 승인되면서 6·25전쟁 참전국은 22개국(전투병 파병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이하 '공원')²⁾이 조성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리하여 현 시점에서 국제연합(유엔)의 공식 묘지인 본 공원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일은 연구사적으로 6·25전쟁 및 유엔 역사의 중요한 장(章)을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시의적이다.

6·25전쟁의 산물인 유엔기념공원은 군사 연구사에서 어떠한 상징성과 현재적 함의를 지니는가? 오늘날 우리는 유엔군 전사자 유해 2,311구³⁾가 안장된 이 공원을 세계 유일의 유엔군묘지이자 성지로 명명한다. 이는 냉전의 여명기에 이데올로기의 충돌이 전 지구적 규모로 확산된 6·25전쟁에서 희생된 타국의 전사자들을 기리는 명분에서 그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근대 이후 전사자의 상징성은 군사묘지라는 국가적 숭배의 신전을 통해 신성화(神聖化)되었다고 피력한 모스(2015)의 견지에서 볼 때, 본 공원은 단일국가를 초월한 다국적 전사자 숭배의 성지로 인식된다.

한편 그간 학술적 차원에서 유엔묘지가 정전 이후 유엔의 공식기

16개국, 의료지원 6개국)이 되었다. 독일이 의료지원국에 포함된 배경은 전쟁 중 지원 의사를 표명한 사실과 유엔군 지원을 목표로 한 점, 유엔군 산하기관으로 활동한 배경과 기존 물자지원국 기준도 정전 이후 활동을 포함한 요소가 거론된다. 이영선, "독일·6·25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키로, 『국방일보』 (2018년 6월 24일), (접속일 2021년 4월 3일),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180625/7/BBSMSTR_000000010021/view.do; 조성훈, 「부산 서독 적십자병원의 활동 성과와 기억」,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5, 2020, 327쪽.

2) 유엔묘지의 명칭 변경은 묘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늠하게 하는 지표로, 문화사회적 맥락상의 함의를 지닌다. 이를 전제로 본고에서는 묘지의 명칭을 '유엔묘지(1951년 1월 18일~1955년 12월 14일)', '유엔기념묘지(1955년 12월 15일~2001년 3월 29일)', '유엔기념공원(2001년 3월 30일~현재)'로 분류하여 표기함을 밝혀둔다. 이정선, 「한국전쟁기 유엔묘지에는 왜 미군 전사자가 안장되지 않았는가? -미군 전사자 유해의 전시 중 동시 숭배 정책과 일본 고쿠라(小倉)에서의 신원 확인을 중심으로-」, 『향도부산』 제40호, 2020③, 283쪽; 사이버 유엔기념공원, "역사", (접속일 2021년 3월 25일), https://www.unmck.or.kr/kor_un_01_1.php

3) 사이버 유엔기념공원, "안장자 및 전사자 현황", (접속일 2021년 3월 25일) https://www.unmck.or.kr/kor_un_01_4.php

념묘지로 변용해 가는 경위를 논의하려는 시도는 미흡했다. 유엔묘지와 관련한 담론 부족은 선행연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⁴⁾ 무엇보다 현재 양적·질적 연구기반이 취약한 배경의 근저에는 1960년부터 묘지를 관리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이하 ‘언커크’)이 1973년 말에 해체되면서 해당 문서가 유엔본부로 이관된 사실이 작용한다.⁵⁾ 그로 인해 1973년 이전의 자료가 국내에 대부분 남아 있지 않은 이유로 관련 담론은 여전히 6·25전쟁 연구사의 공백으로 남겨져 있다. 그러한 점에서 2013년에 발간된 『(국제평화도시의 환상을 넘어) 유엔기념공원과 부산』이 연구 기반을 확립하는데 기여했으나, 후속 문헌 층이 두텁지 않은 실정이다.⁶⁾

-
- 4) 이석조, 『젊은 영혼들과 함께 한 천일간의 백서: 제한유엔기념공원』, 다산, 2008; 김선미, 「제한 유엔기념공원의 조성 경위와 관리의 성격」, 민주주의사회연구소편, 『(국제평화도시의 환상을 넘어) 유엔기념공원과 부산』, 선인, 2013, 66-106쪽; 우신구, 「유엔기념공원의 형성과정과 공간구조」, 민주주의사회연구소편, 『(국제평화도시의 환상을 넘어) 유엔기념공원과 부산』, 선인, 2013, 161-192쪽; 이정선,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유엔기념공원의 유산 해석 전략 연구: 벨기에·프랑스의 ‘제1차 세계 대전의 장례와 추모 유산’ 사례를 참고로」, 『문화정책논총』 34집 1호, 2020②, 159-186쪽.
- 5) "언커크 解體聲明", 『조선일보』 (1973년 11월 30일), 2면; 이정선, 위의 논문, 2020 ②, 163쪽; 사이버 유엔기념공원, "역사", 앞의 홈페이지, 이정선, 위의 논문, 2020 ②과 공원 홈페이지상의 언커크 해체년도를 1973년으로 바로잡고자 한다.
- 6) 2013년 이후 발표된 공원과 관련한 논저는 강인철, 『전쟁과 희생: 한국의 전사자 숭배』, 역사비평사, 2019, 397-405쪽; 정성운, 「유엔기념공원의 중층적 정체성과 구조적 문제점 -묘역의 공간구성과 의미구조를 중심으로-」, 『항도부산』 제38호, 2019, 285-323쪽; 전제일, 『헤이든 화이트의 서사적 관점으로 본 부산근대 문화유산의 가치에 관한 고찰-부산항 제 1부두와 제한유엔기념공원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2020; 이정선,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전략에 관한 연구 -일본 근대문화유산 사례 고찰을 통한 시론적 탐색-」,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1권 제1호, 2020①, 295-323쪽; 이정선, 위의 논문, 2020②; 이정선, 앞의 논문, 2020③; Lee, C., "Other Spaces: Exploring Kyushu as 'Heterotopia for Humanity' in Japan's Korean War,"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Science and Humanity* 10 (4), 2020, pp. 119-126; Lee, C., "Moment to be one": Senses of Place in The United

이 같은 문제의식과 배경을 기반으로 본고는 유엔과의 연결고리 탐색에 주안점을 두어 유엔군사령부의 실체인 미군이 조성한 유엔묘지가 1950년대에 유엔이 관할하는 기념묘지로 거듭나게 되는 경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955~1960년에 초점을 맞추어 1955년 유엔총회가 채택한 결의문 제977(X)호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유엔이 1959년에 ‘재한 국제연합기념묘지의 설치 및 관리 유지에 관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간의 협정(이하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이어서 기존 군사 담론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1960년 3월 31일 언커크의 묘지 인수인계식 양상도 최초로 짚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국회 회의록과 신문기사, 유엔연감 및 부속 문서, 미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이하 ‘NARA’) 문헌, 공원 기념관 소장 자료 등을 검토하였다. 특히 필자는 2019년 미국 유엔본부 부속 유엔아카이브 기록관리부(United Nations Archives Records and Management Section, 이하 ‘유엔아카이브’) 현장에서 문헌 조사를 실시하여 1955년경부터 1960년대에 걸친 자료 1천여 장을 발굴하였다.⁷⁾ 무엇보다 유엔아카이브 사료는 기존에 공개되지 않은 초기 유엔묘지 조성 및 운영 경위의 일단을 밝히는 데 기여하리라 판단된다.

이와 같이 본고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1950년대 중반 유엔묘지와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in Dominique Vanneste & Wesley Gruijthuisen (eds.), *Value of Heritage for Tourism* (Selected Proceedings from the 6th UNESCO UNITWIN Conference 2019), Leuven: University of Leuven, 2020, pp. 149–158 등을 참조.

7) 본 연구는 이정선, 위의 논문, 2020①, 315쪽의 연구 결과물의 일부로, 온라인 포로 묘역배치도와 설계도, 신문기사는 이정선, 위의 논문, 2020②, 173–174쪽에 발표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둔다. 또한 이정선, 위의 논문, 2020③, 288–289쪽에는 미군 전사자의 본토 송환과 안장 관련 사료가 언급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미공개 사료를 군사 연구 차원에서 최초로 소개하고자 한다.

유엔과의 긴밀한 연계망이 배태되었는가를 규명할 것이다. 그리고 분석 과정에서 드러난 오류를 다방면의 사료 고증으로 비정(批正)하는 작업 역시 본 연구의 부차적 목적이라고 하겠다. 궁극적으로 묘지 건립 70주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및 유엔의 군사유적을 통해 6·25전쟁이 남긴 의미를 재조명해 보려 한다. 이는 6·25전쟁에 대한 다각적 접근으로 ‘전쟁의 시대’에서 정전 후 ‘평화의 시대’⁸⁾로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하는 학술적 시도이기도 하다.

2. 유엔묘지에서 재한 유엔기념묘지로의 변천과정

가. 제21회 43차 대한민국 국회 논의

유엔묘지에는 1951년 4월 6일 봉헌 이후 11,000명 이상의 유엔군 전사자가 안장되어 있었으나, 미국, 필리핀, 에티오피아 등 대부분의 전사자 유해가 1950년대 중반까지 본국으로 송환되었다.⁹⁾ 정전 후 안정을 되찾아가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본 묘지를 법률적 근거를 지닌 묘지로 전환시키려는 일련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1955년 8월 9일 조정환 외무부장관 서리(署理)는 다그 함마숄드(Dag Hammarskjöld)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어 대한민국 정부가 부산 교외에 소재한 묘지의 대지를 유엔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내용을 결의했다고 통보했다.¹⁰⁾

8) 이동원, 「1952~1955년, 한국후방관구사령부(Kcomz)의 창설과 해체」 『軍史』 第91號, 2014, 34쪽.

9) 이석조, 앞의 서적, 2008, 212~213쪽; 김선미, 앞의 논문, 2013, 77쪽; 강인철, 앞의 서적, 2019, 398쪽, 사이버 유엔기념공원, "안장자 및 전사자 현황", 앞의 홈페이지.

10)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conclusion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a United

본격적인 진척은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15개 전투병 파병국의 제안을 계기로 이루어졌다.¹¹⁾ 1955년 8월 15개국은 9월 20일 개막하는 유엔총회 10차 회의에서 ‘재한 국제연합기념묘지의 설치 및 관리 유지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a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관련 안건을 논의하도록 제안하는 서한을 함마술드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¹²⁾ 본 서한에서 유엔참전국 대표단은 약 2천명의 6·25전쟁 전사자가 대한민국 부산 인근의 당곡리에 안장되어 있으며, 이제 그들의 묘지를 영구적으로 관리해야 할 때가 왔다고 주지시켰다.¹³⁾ 그리고 이 묘지를 유엔이 관할하여 '유엔기념묘지로 조성·관리하는 작업은 전사자들에 걸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A/4330), New York: UN, 4 December 1959, p. 1; 김선미, 위의 논문, 82쪽.

11) "釜山郊外에 유엔墓地設置 韓國參戰十五個國代表가 提案", 『동아일보』(1955년 8월 21일), 3면; 우신구, 위의 논문, 2013, 170쪽. 룩셈부르크가 제외된 구체적인 이유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12)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UPPLEMENTARY LIST OF ITEMS FOR THE AGENDA OF THE TENTH REGULAR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ITEM PROPOSED BY AUSTRALIA, BELGIUM, CANADA, COLOMBIA, ETHIOPIA, FRANCE, GREECE, THE NETHERLANDS, NEW ZEALAND, THE PHILIPPINES, THE UNION OF SOUTH AFRICA, THAILAND, TURKEY,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A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A/2939), New York: UN, 22 August 1955, pp. 1-4; "Letter dated 17 August 1955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by the Permanent Representatives of Australia, Belgium, Canada, Colombia, Ethiopia, France, Greece, the Netherlands, New Zealand, the Philippines, the Union of South Africa, Thailand, Turkey,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the United Nations" (A/2939/Corr.1), New York: UN, 25 August 1955 p. 1; 『동아일보』(1955년 8월 21일), 위의 기사. 『동아일보』 지면에는 서한 발신일이 8월 19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2건의 유엔문서(A/2939, A/2939/Corr.1)상에는 날짜가 모두 8월 17일로 명기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7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8월 17일에 우선순위를 두고자 한다.

13)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bid*, p. 3.

맞는 헌사(appropriate tribute)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¹⁴⁾. 그리고 9월 30일에 개최된 유엔총회에서 유엔묘지 안건을 표결로 부친 결과 44개국이 찬성을 표명한 반면, 소련을 포함한 체코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인도 등 6개국은 기권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⁵⁾

유엔총회 결의 후 11월 15일 국회 본 회의에서는 정기원 외무위원장의 주도로 유엔군 묘지 설정에 관한 건의가 진행되었다.¹⁶⁾ 본 회의에서 정 외무위원장은 6·25전쟁에서 희생된 유엔군에 묘지를 제공하여 유엔의 기념사업으로서 국회는 유엔군 묘지를 성지로 설정할 것을 유엔총회에 건의하도록, 대한민국 정부에 건의하는 취지를 요청했다.¹⁷⁾

한편 당시 국회 본 회의록을 검토해 보면 황성수 의원이 묘지를 설명하는 “성지(Holy land)”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 이 건의안 중에 성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홀리랜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에게는 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에게 파레스타인 성지라든지 이제 김법린 위원장에게도 제가 물었읍니다마는 불교계에 불타가야 성지, 회회교에 백가의 성지라든지 이것 성지로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군인이 돌아가신 묘지가 곧 성지가 되겠는가 하는 데에는 좀 의아가 없지도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성지라는 말을 외무분과위원회에 위임해서 다른 좋은

14) *Ibid.*

15)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10th session: 530th plenary meeting" (A/PV.530), New York : UN, 30 September 1955, p. 197; 『韓國에 『유엔』 墓地 UN總會서設置案上程』, 『동아일보』(1955년 10월 2일), 3면.

16) 국회사무처, 제21회 제43차 국회 본 회의록 『국회입시회의 속기록』, 의사일정 제8항 "유엔군 묘지 설정에 관한 건의안"(1955년 11월 15일), 40-43쪽; 김선미, 앞의 논문, 2013, 82쪽.

17) 국회사무처, 위의 자료, 41쪽; 김선미, 위의 논문, 102쪽 (각주 36).

말로 바꿀 수 있지 않은가 또 그렇게 해서 성지라는 말을 꼭 쓰는 경우라도 이것은 종교의 대상은 아니고 그러한 고귀한 피를 바친 이에게 대한 경의를 표하는 묘지라는 점을 밝혀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우리 국회가 이런 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점 첨가해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¹⁸⁾

이에 대해 박영종 의원은 성지 표기에 대한 황 의원의 수정 요청과 그에 수긍하는 정 외무위원장의 타협적인 태도를 지적했다.¹⁹⁾ 여기서 박 의원이 미 링컨(Lincoln) 대통령의 게티스버그(Gettysburg) 연설²⁰⁾을 인용하며 신성화에 관한 의견을 피력한 부분이 괄목할 만하다. 박 의원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다음 주장을 살펴보자.

(.....) 겐티스버그 스피취라는 그 글을 읽어 볼 것 같으면 이 땅을 신성화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죽은 사람뿐이다, 우리 살아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신성화할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서 바로 성지에 쓸 수 있는 신성이라는 말 호리라고 하는 영어를 써 가지고 있어요.(.....)

될 수 있는 대로면 신성한 장소라든지 신성한 묘지라고 이렇게 고치겠습니다만 이상 규칙으로 한 말씀 드려드립니다.²¹⁾

박영종 의원은 위와 같은 논지로 국회의원들 203명이 성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²²⁾ 이에

18) 위의 자료, 42쪽. 인용문에는 1950년대 당시 국문 표기 원문을 사용하였다.

19) 위의 자료, 42쪽.

20) 1863년 11월 19일 미국 제16대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격전지였던 게티스버그에서 남긴 2분간의 연설이다. 주요 내용은 미국 남북전쟁과 본 전투 전사자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는 요지이다. 전대길, "[전대길의 CEO칼럼] 아브라함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문," 『아웃소싱타임즈』(2019년 8월 21일),(접속일 2021년 3월 20일), <https://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582>

21) 국회사무처(1955년 11월 15일), 앞의 자료, 42쪽.

22) 위의 자료, 42쪽.

대해 정 외무위원장은 20명 이상의 외교위원회 의원들의 개별적인 의견을 청취한 결과 성지가 좋다는 견해에 근거하여 스스로 채택했다는 사실을 명시했다.²³⁾ 결과적으로 본 건의안은 재적 수 130명 중 동의 91명과 반대 0으로 통과되어, 정부는 유엔에 결의사항을 전달하게 되었다.²⁴⁾

이 같은 논쟁은 유엔묘지에 신성성을 부여하는 점을 둘러싸고 일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가 존재했음을 드러낸다. 즉, 성지가 종교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황 의원이 “성지라는 수정용어에 대해 외무위원회에 일임해서 다른 적합한 말로 수정하도록”²⁵⁾ 요구한 사실과, 이에 비해 박 의원의 주장과 같이 종교와는 다른 차원에서 전사자를 기리려는 차이가 읽혀진다. 본 과정은 오늘날 공원에 통용되는 성지의 명문화에 관한 하나의 단서를 제공한다. 그리고 묘지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게티스버그 연설이 인용되어 유엔기념묘지를 성지로 설정하는 논리로 뒷받침된 사실은 국회 본회의 회의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음을 밝혀둔다.

나. 1955년 유엔총회 결의문 제977(X)호 채택

본 결의로부터 한 달 후인 12월 15일에 유엔총회는 결의문 제 977(X)호를 채택했다. 이 결의문은 유엔군의 묘지를 당시까지 유엔 군사령부가 관리해 왔으나, 영구 조치가 갖추어지지 않은 실정에 다음과 같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²⁶⁾

23) 위의 자료, 43쪽.

24) 위의 자료, 43쪽.

25) 위의 자료, 41쪽.

26) United Nations, “Establishment and the Maintenance of the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No.977(X)],” 1955, pp. 37-38.

1. (……) 유엔총회는 대한민국 부산 근처 당곡리에 소재한 묘지를 국제연합기념묘지로 설치하여 관리 및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2. 유엔 사무총장이 본 묘지에 안장된 국가의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 (a) 본 기념묘지의 대지에 관한 영구적인 사용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협정 체결을 교섭할 것과,
 - (b) 본 묘지의 설치와 영구적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며
3. 이러한 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할당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의 예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사무총장에게 부여한다.²⁷⁾

본 결의문을 근거로 기존의 유엔묘지(United Nations Cemetery)에는 제한 유엔기념묘지(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로서 유엔군을 ‘기념’하는 상징성이 부여되었다. 즉, 유엔기념묘지가 우리 국회와 정부, 유엔총회 결의를 거쳐 “국제사회의 미래에 역사로 남을 유의미한 결정²⁸⁾”으로서 존립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또한 본 결의는 “전사자들의 유족에 대한 유엔의 헌사²⁹⁾”로 간주되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처럼 1955년의 결의문은 유엔총회가 본 묘지에 유엔기념묘지라는 공식 명명권을 부여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그로부터 약 반세기 후인 2001년에는 묘지의 명칭이 한글에 한하여 유엔기념묘지에서

27) 외무부(국가기록원 자료), "재한국 국제연합기념묘지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간의 협정(외무부 가역)", 1959년, 1쪽; 김선미, 앞의 논문, 2013, 82-83쪽.

28) United Nations, "Establishment and the Maintenance of the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No.977(X)]," Tenth Session: 557th plenary meeting, 15 December 1955, pp. 468. 본 표현은 미국 대표 메로(Merrow)의 발언 중에 등장한 것이다.

29)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Report of the 5th Committee" (A/3096), New York: UN, 14 December 1955, p. 2.

‘유엔기념공원’으로 변경³⁰⁾되지만,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영문 명칭은 본 결의문에 근거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유엔의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유엔기념묘지를 법률에 근거한 공식 조직으로 지정하는 움직임은 1956년 8월 23일 유엔 측이 협정 초안을 제시하면서 본격화되었다.³¹⁾ 이어서 일부 유엔참전국과 대한민국 정부가 대립한 쟁점과 그 조율 과정을 고찰하기로 한다.

3. 재한 유엔기념묘지의 탄생

가. 1959년 ‘재한 국제연합기념묘지의 설치 및 관리 유지에 관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간의 협정’ 체결

유엔과 대한민국 정부는 1955년 결의를 계기로 재한 유엔기념묘지가 명실상부한 유엔의 공식 묘지라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으나 이후 협정을 체결하기까지의 협상은 3년 가까이 지속되었다.³²⁾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상에 나타난 주요 쟁점은 제4조 1항(현지 채용자에 부여될 면제권에 관한 규정) 그리고 제9조(유엔이 토지관리

30) 2019년 9월 18일 공원 관리자 측과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1년의 명칭 변경은 묘지에서 지역사회에 친근감을 주기 위해 당시 조명행 유엔기념묘지관리처장의 주도로 추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과정에서 본 정보를 제공한 담당자(박은정 대외협력국장)에게 감사를 전한다.

31) 외교통상부,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재한국 국제연합기념 묘지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한 한-국제연합간의 협정』 v.3 체결철, 1959.4-1960.3 (59-076), 502쪽; 김선미, 앞의 논문, 2013, 83쪽. 한편 국사편찬위원회 사료 검토 결과 묘지의 협정 초안 작성 및 체결에 관한 참전국 간의 논의는 1956년 이전부터 주도면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점도 발견된다.

32) 김선미, 위의 논문, 83쪽.

를 정지할 경우에 동 연합의 권리 및 의무를 계승하게 될 기념위원회에 관한 규정)와 관련한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³³⁾

먼저 제4조에 관해 당초 대한민국 정부는 현지 채용자에 대해 특권과 면제가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체결 시점에는 본 조항이 “시간으로 고용되는 현지 채용자에 대해 하등의 특권 및 면제가 부여되지 않으며, 시간 이외의 기준으로 고용되는 현지 채용자라 하더라도 공적행위에 한해서만 면제가 부여”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³⁴⁾ 또한 병역 혹은 의무적인 노역에 관해서는 특권 및 면제가 부여되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되었다.³⁵⁾ 이에 관해 김선미(2013)는 묘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또는 외국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영향력을 배제할 목적으로 제4조가 마련되었다고 분석했다.³⁶⁾

그리고 제9조는 유엔이 묘지관리를 정지한 후의 주체에 관한 것으로, 이는 향후 1974년 재한 유엔기념묘지 관리주체의 변경과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당초 대한민국 정부는 기념묘지의 관리 책임을 인수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조율 과정에서 제3의 기구를 설립하여 우리나라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수정한 문안에 합의하게 되었다.³⁷⁾ 1959년 외교사료해제집에 따르면 유엔 측은 1955년 결의문 제977(X)호가 유엔이 직접 묘지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다.³⁸⁾

한편 유엔연감 분석 결과, 결의문 채택 후 1958년까지 재한 유엔 기념묘지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for the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이하 ‘기념묘지위원회’)는

33) 외교통상부(1959.4-1960.3), v.3, 앞의 자료, 502쪽.

34) 외교통상부, 『재한국 국제연합기념 묘지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한 한·국제연합간의 협정』 v.2. 체결교섭, 1958-59.3 (59-075), 501쪽.

35) 위의 자료, 501쪽.

36) 김선미, 앞의 논문, 2013, 83쪽.

37) 외교통상부(1958-59.3), v.2, 앞의 자료, 501쪽; 김선미, 위의 논문, 83, 85쪽.

38) 외교통상부, 위의 자료, 501쪽.

묘지에 전사자 유해가 안장된 유엔참전국, 즉 호주,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터키, 남아프리카연방, 영국 및 유엔묘지를 관리하던 미국으로 구성되어 있던 사실이 발견된다.³⁹⁾ 이 대목에서 미국은 전시 중에 무명용사를 제외한 자국 전사자를 본국으로 일괄 송환하였기에 1950년대 당시 본 묘지에 유해가 안장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⁴⁰⁾

특히 제9조를 둘러싼 기념묘지위원회의 견해는 한층 엇갈렸다. 터키는 “(중략) 모든 묘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이 한국으로 복귀하며 제9조1항(토지 소유권에 관한 것)은 추가로 구득되는 토지에도 적용된다”는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뉴질랜드는 본 수정안에 반대했다.⁴¹⁾ 또한 호주는 “제9조 및 10조 수정안(묘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권 및 추가 구득되는 토지에 대한 협정 규정 적용 관련)이 향후 기념묘지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수락되어

39) Library and Archives Canada (LAC), RG25: Department of External Affairs Fonds (R219-0-2-E), ACA001_01_01C0037, [U.N. Cemetery in Korea, Part 2, 1955/08/01-1965/03/31 (File 7-3-3-5)], "UNITEDNATIONS (sic) MEMORIAL CEMETERY IN KOREA--ADVISORY COMMITTEE MEETING JUN22/56 (FM PERMANENT MISSION NEWYORK JUN25/56 UNCLAS)", 1956, pp. 1-3. (원본 소장: LAC[캐나다 국립문서보관소-도서관], 디지털화 자료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국사편찬위원회 디지털 아카이브, (접속일 2021년 4월 3일), <http://archive.history.go.kr>; United Nations, *The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New York: UN, 1956, p. 497; United Nations, *The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New York: UN, 1957, p. 512; United Nations, *The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New York: UN, 1958, p. 517. 1955년 당시 유엔묘지에 대한민국 전사자 36구도 안장되어 있었으나 초기에 우리나라는 기념묘지위원회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1961년 국호 변경 이전의 명칭(Union of South Africa)으로 표기했다.

40) 2021년 3월 현재 공원에 안장된 40명은 1960년대 이후 사망자들이다. 김선미, 앞의 논문, 2013, 79쪽; 정성운, 앞의 논문, 2019, 291-292쪽, 304-305쪽; 이정선, 앞의 논문, 2020②, 170쪽; 이정선, 앞의 논문, 2020③, 290-293쪽; NARA (1953), *Op. Cit*를 참조.

41) 외교통상부,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재한국 국제연합기념 묘지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한 한-국제연합간의 협정』 v.1 체결교섭, 1955-57 (59-074), 500쪽.

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초안 제4조 및 9조의 규정이 유엔 측에 수락 가능한 내용으로 규정된다면 제10조의 수정안을 수락해도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⁴²⁾

이처럼 터키와 뉴질랜드, 호주 간의 논의를 통해서도 묘지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관리권 행사를 견제하려는 기념묘지위원회의 의도가 엿보인다.⁴³⁾ 특히 유엔이 관리를 중지한 후의 주체를 결정하는 쟁점을 둘러싸고 논쟁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 뒤 1959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에 걸쳐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사절로 레슬리 문로(Leslie Munro) 뉴질랜드 유엔대표가 방문했다.⁴⁴⁾ 마지막 날인 3월 2일 문로 특사와 조정환 외무부 장관은 그간 조율해 온 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임시 서명했다.⁴⁵⁾ 정식 체결에 앞선 가서명(假調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명이 당일 석간신문의 제1면에 보도된 사실로부터 본 협정에 대한 국내 관심을 읽을 수 있다.⁴⁶⁾

이처럼 3월 2일의 임시 조인을 포함하여 국내 언론이 실제 협정 체결 전달인 11월 5일도 다음날 유엔본부에서 묘지 협정에 날인할 사항을 사전 예고하는 동시에 그간의 협상경위를 상세히 보도한 사실 역시 괄목할 만하다.⁴⁷⁾ 협정을 앞두고 언론에서는 “韓國戰爭에서 散華한 二千餘名の 「유엔」 軍人들은 그들의 永遠한 무덤을 韓國

42) 위의 자료, 500쪽.

43) 김선미, 앞의 논문, 2013, 83쪽.

44) “曹長官과 歡談 滯韓中인 「문로」 卿,” 『경향신문』 (1959년 2월 24일), 1면; 외교통상부(1959.4-1960.3), v.3, 앞의 자료, 502쪽.

45) 외교통상부(1958-59.3), v.2, 앞의 자료, 501쪽.

46) “유엔墓地管理協定에 假調印-二日, 曹外務 「문로」 卿間,” 『동아일보』 (1959년 3월 2일), 1면. 주목할 만한 사실은 1959년 3월 2일 문로 특사와 조 장관 간의 임시 서명 장면이 공원 기념관에 “1959년 11월 재한유엔기념공원의 설치협정에 서명하는 유엔과 한국대표”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유엔기념묘지의 변천 과정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부족했음을 방증하며 향후 면밀한 고증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47) “六日에 調印키로 韓國 「유엔」 墓地協定,” 『동아일보』 (1959년 11월 5일), 1면.

에서 얻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⁴⁸⁾

4년에 가까운 협상 결과, 1959년 11월 6일 유엔본부에서 함마술드 유엔 사무총장과 조정환 외무부장관은 정식으로 ‘제한 국제연합 기념묘지의 설치 및 관리 유지에 관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간의 협정’을 체결했다.⁴⁹⁾ 오후 12시 45분에 사무총장실에서 본 협정에 날인하는 서명식에서 조 장관은 서명 후 함마술드 사무총장에게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⁵⁰⁾

우리는 集團 安全保障을 爲한 「유엔」의 旗幟 아래 韓國에서 戰死한 이들 勇士에 對한 忠心으로부터의 感謝를 느끼면서 韓國 땅에 마련된 「유엔」 墓地를 贈呈하는 바이며 또한 우리는 그들이 다 이루지 못하였던 戰業의 完遂를 爲하여 우리의 생명과 몸과 希望을 다 바치는 바이다.⁵¹⁾

이에 대해 함마술드 사무총장은 유엔을 대표하여 대한민국의 묘지 증정에 감사를 표했다.⁵²⁾ 조 장관의 발언에서 주목할 점은 목숨을 바친 용사를 위해 이 땅을 바침과 동시에 그들이 이룩한 미완의 "戰業의 完遂를 爲하여 우리의 생명과 몸과 希望을 다 바치"는 대목이다. 본 표현은 게티스버그 연설 중 "여기서 싸운 그들이 그렇게도 고결하게 진전시킨 미완의 과업에 봉헌되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살아있는 우리 자신들⁵³⁾"이라는 부분과 유사성을 띤다. 게티스버그

48) 위의 기사.

49) United Nations Assembly(1959), A/4330, *Op. Cit.*, p. 1; "유엔墓地協定 曹外務總長調印," 『동아일보』(1959년 11월 8일), 1면. 이에 따라 앞의 주 46)에서 공원 기념관에 전시되어야 할 올바른 협정 체결 장면은 1959년 11월 6일 유엔본부 함마술드 사무총장실에서 진행된 사진("『유엔』 墓地協定調印光景" 『동아일보』 [1959년 11월 15일], 1면)이 되어야 한다.

50) 『동아일보』(1959년 11월 8일). 위의 기사.

51) 위의 기사.

52) 위의 기사.

53) 원문은 "It is for us the living, rather, to be dedicated here to the

와 유엔기념묘지의 역사적 배경이나 주체는 상이하지만, 국가와 이념을 위해 희생된 전사자들을 묘지를 통해 기리는 점에서 상동성이 발견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총 11조로 이루어진 협정 중 묘지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제 2조를 살펴보자.

[제2조1항] 대한민국은 국제연합에 기념묘지가 소재하는 부산시 근처 “당곡리”의 토지를 영원히 무상으로 기증한다.

[제2조2항] 대한민국은 본조 1항에 규정된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본 협정이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하등의 부담 또는 제한 없이 취득하고, 이를 국제연합에 이양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법률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⁵⁴⁾

제2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과 유엔 간의 협정 체결은 유엔기념묘지의 소유권이 유엔에 완전히 귀속되는 것을 의미했다. 한편 체결 후 본 협정에 관한 국회 비준 동의 회의에서는 국회의원의 간의 논쟁이 일어났다.⁵⁵⁾ 4년 전 유엔묘지를 지칭하는 성지라는 용어에 이어, 이번에는 소유권 관련 논의가 대두된 것이다.

제33회 16차 국회 회의 속기록을 분석하면 당시 국회의원들이 소유권 이양과 관련하여 협정 체결을 “우리領土의 變更으로 할만한 重大한 案件⁵⁶⁾”으로 간주한 사실이 드러난다. 최규남 외무위원장은

unfinished work which they who fought here have thus far so nobly advanced.”이다. 전대길, 앞의 기사, 2019.

54) 외무부·국가기록원 자료, 앞의 자료, 1959, 2-4쪽; 김선미, 앞의 논문, 2013, 86쪽.

55) 國會事務處, “國際聯合記念墓地的設置 및 維持에 關한 大韓民國과 國際聯合間의 協定에 關한 批准 同意의 件”(第三十三回 第十六號(第十六次會議) 國會定期會議速記錄, 禮紀 四二九二年 十二月 一日), 6-10쪽.

56) 위의 자료, 10쪽.

협정 배경을 설명하며 소유권 이양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주권 침해 여부와 국제법상 타당성에 관한 의원들의 논의를 촉구했다.⁵⁷⁾ 그리고 유엔묘지의 기증은 “友誼精神”을 나타내는 자발적 행위이므로 국제법상 우려는 없음을 주장하였다.⁵⁸⁾

이에 대해 엄상섭 의원은 우리 영토의 소유권을 국민 이외인 유엔이 가지는 것에 대한 국내법 및 국제법상의 난점을 지적하며, 무상 대여, 즉 사용권만 증여하는 방식으로 하면 법적 문제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⁵⁹⁾ 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최규하 외무부 차관은 묘지 증여는 대한민국을 위해 싸운 타국의 유엔군 장병들을 위해 나라가 해야 할 조그마한 감사 표시임을 강조했다.⁶⁰⁾ 또한 유엔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의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워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이 할 일이라고 부연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⁶¹⁾ 결국 동의안은 통과되어 12월 11일 정부가 국회 비준을 유엔에 통보함으로써 협정이 발효되었다.⁶²⁾

1959년 협정 체결에 근거하여 유엔묘지는 유엔의 명실상부한 기념묘지로 거듭나게 되었다.⁶³⁾ ‘유엔묘지’에서 ‘유엔기념묘지’로의 변천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법적 자격 부여에 따른 군사·외교·문화사회적 함의와 변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앞서 결의문 제977(X)호는 유엔과 대한민국 정부 간 협정의 초석으로서 그간의 유엔군사령부가 관리해 온 ‘유엔묘지’에 추모의 상징성이 강화된 ‘유엔기념묘지’로 전환시키는 마중물이 되었다. 유엔군을 기념하는(memorialize) 차원에서 유엔묘지를 영구적 시설로 지정하여 면밀

57) 위의 자료, 7쪽.

58) 위의 자료, 7쪽.

59) 위의 자료, 9쪽.

60) 위의 자료, 9쪽; 김선미, 앞의 논문, 2013, 88쪽.

61) 國會事務處, 위의 자료, 9쪽.

62)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4330), 1959, *Op. Cit.*, p. 1; 김선미, 앞의 논문, 2013, 85쪽.

63) 김선미, 앞의 논문, 2013, 85쪽.

히 관리하고자 하는 결정은 기억의 영속적 전승(傳承)인 기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전술한대로 전사자들뿐 아니라 “유족에 대한 적절한 헌사”이기도 하며, 15개 전투병 파병국의 공동 의지에 의해 묘지의 항구적 관리를 위한 예산 사용 권한이 유엔에 부여되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1951년 4월 6일 리지웨이(Ridgway) 미8군 사령관이 봉납한 유엔묘지 전몰장병 위령제⁶⁴⁾ 이후 본 묘지는 유엔총회 결의문과 협정을 통해 유엔군 전사자를 기념하는 거점으로 의미를 더해 갔다. 이는 1955년 유엔총회의 표결에서 일부 공산권 중심 세력이 기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공인한 유일무이의 묘지라는 의의를 지닌다. 그 후 새로운 관리 주체를 맞이한 유엔기념묘지는 1960년대 유엔 산하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나. 관리 주체의 변천- 유엔군사령부에서 언커크로

유엔군사령부에서 언커크⁶⁵⁾로의 관리주체 변천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유엔아카이브의 문헌조사를 통해 발견한 자료를 소개한다. 유엔아카이브 현장에 소장되어 있는 관련 사료는 1959년 협정 체결 후 유엔기념묘지가 유엔 산하기관으로 편입된 시절의 문헌이 주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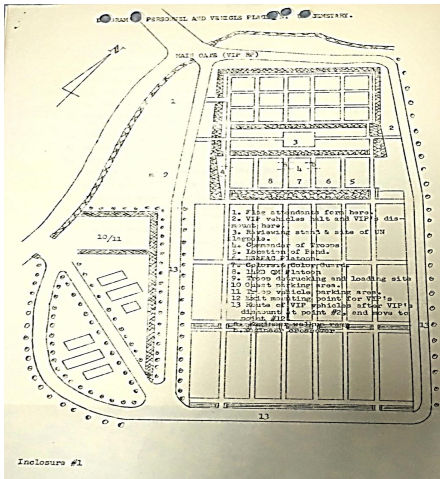
64)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Electronic resource.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2005), RG 92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Quartermaster General; (Copies of Unclassified Documents Relating to the QM Corps in the Korean War, 1948-52; Series), Graves Registration thru Brig. Gen. Hastings Folder(1)/ Office of the Quartermaster General, "HISTORICAL REPORT-HEADQUARTERS, AMERICAN GRAVES REGISTRATION SERVICE GROUP, 8204th ARMY UNIT APO 3 (Period of Operation 2 January 1951-15 March 1956), (Graves registration in the Korean conflict(Quartermaster review, March-April, 1953)", John C. Cook, QMC, 1953, p. 139 (원본 소장처: 미국 국립 문서기록관리청, 디지털화 자료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65) 1960년 당시 언커크 사무국장은 아그하시(Aghassi)였고 묘지 초대 현장감독관은 안자루트(Anzarut)였다. 김선미, 앞의 논문, 2013, 90쪽을 참고.

이룬다. 이는 1973년 언커크 해체에 따라 유엔본부로 이관된 이래 이해관계자들과 학계에 대부분 알려지지 않은 미공개 사료라는 점에서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유엔아카이브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약 1,000장의 문서와 사진 가운데 본고에서는 언커크의 유엔기념묘지 관리시기의 서막을 알리는 1960년 3월 31일 인수인계식 및 사진 준비 사료를 공개한다.

1960년 3월 전후로 묘지에서는 유엔의 공식 산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었다. 다음 <그림 1>을 통해 인수인계식이 개최되기 2~3주 전부터 행사 인력 및 차량 대기사항 등 세부 동선을 배치도에 상세히 기록해 두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인수인계식 사진 준비 배치도⁶⁶⁾



<그림 2> 관련 범례⁶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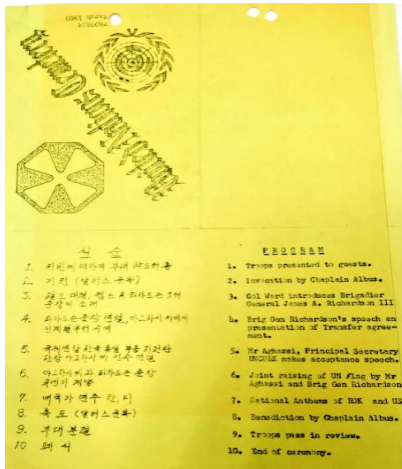
1. 깃발 담당 인력
 2. 귀빈(VIP) 차량 대기 및 귀빈 하차 장소
 3. 유엔기 사열대
 4. 사령관
 5. 군악대
 6. USAPAC 소대
 7. 군기호위병 (color guard)
 8. 142병참소대
 9. 부대 트럭 하역 장소
 10. 참석자 주차장
 11. 소대(platoon) 차량 주차장
 12. 귀빈 하차 장소
 13. 귀빈 차량 동선
- (#2에서 귀빈 하차 후 #12로 이동)

66) <그림 1>의 원제는 "DIAGRAM PERSONNEL AND VEHICLE PLACEMENT UN CEMETARY (sic)". United Nations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Section (UNA), Folder Reference No. S-0690-0005-01, Folder Date 1960-1960 [Organization - Transfer of the Cemetary (sic) from the 142nd Quartermaster Battalion of the United Kingdom to UNCURK], "Transfer Ceremony United Nations Cemetary(sic)", "(Inlosure#1) Layout of Cemetary (sic) Site", 15 March 1960.

67) <그림 1>의 사료 원문의 변형·가공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3월 31일 오후 2시 유엔기념묘지에서는 미군에서 언커크로의 인수계식이 개최되었다. 행사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터키의 멘데레스(Menderes) 총리를 비롯하여 미군 및 참전국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⁶⁸⁾ <그림 3>의 팸플릿에 기재된 식순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유엔기념묘지 인수계식 행사 프로그램 (1960년 3월 31일)⁶⁹⁾



1. 귀빈에 대하여 부대 받들러 총
2. 기원 (알버스 군목)
3. 월드대령, 잭슨 A. 리처드슨 3세
준장의 소개
4. 리처드슨 준장 연설, 아그하시씨
에게 인계협약서 수여
5. 국제연합한국통일부흥위원단장
아그하시씨의 인수 연설
6. 아그하시씨와 리처드슨 준장
유엔기 계약
7. 애국가 연주 한, 미
8. 축도 (알버스 군목)
9. 부대 분열
10. 폐식(70)

별도로 범례를 필자가 추가하여 수정한 것이다. 범례상의 설명은 배치도를 참고하여 번역한 것이다. 본 배치도상에는 ⑪ '소대(Platoon)'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어서 살펴볼 행사 연설문에는 '대대(Battalion)'로 표기되어 있다.

68) UNA, [Organization - Transfer of the Cemetary (sic) from the 142nd Quartermaster Battalion of the United Kingdom to UNCURK] *Op. Cit.*, "After Action Report UN Cemetary Transfer Ceremony, 31 March 1960", 20 April 1960, "(Inclosure 6) "A"-Frame News (Pusan Area Command APO 59), Vol. VI., No. 8, April 18, 1960", Folder Date 1960-1960. 한편 유엔아카이브 현장 문서군의 명칭이 "142nd Quartermaster Battalion of the United Kingdom to UNCURK"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을 발견했는데 이 역시 중요한 오류이다. 제142병참대대는 영국군이 아닌 미군이므로, 유엔아카이브 문서군 제목은 정정되어야 한다.

69) UNA, *Op. Cit.*, "After Action Report UN Cemetary Transfer Ceremony, 31 March 1960", 20 April 1960, "(Inclosure 5) Program Handout." Folder Date 1960-1960.

70) *Ibid.* "(Inclosure 5) Program Handout." 식순은 <그림 3>의 당시 팸플릿상의 원

유엔아카이브 현장 자료를 조사한 결과 이 행사는 단순한 인수인계식 이상으로 미군이 주도한 유엔군의 공적을 기리고 유엔기념묘지의 존립 의의를 참석자인 귀빈들과 관계자들에게 확인시키는 기념 성격이 짙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⁷¹⁾ 초대장에 따르면 “過去九年 동안 美陸軍에 依해서 管理하여온 U.N墓地事務를 韓國統一, 復興을 爲하여 國際聯合에 管理事務를 移讓”한다고 기술되어 있다.⁷²⁾ 그리고 인수인계식의 워드 대령 연설 텍스트와 관련 영자신문을 분석함으로써 그간 규명되지 않은 1950년대 유엔묘지 관리 현황의 일부도 확인된다.⁷³⁾

워드 대령은 축사를 통해 1951년 유엔묘지 건립 이후 9년간 미8군이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유엔성지(United Nations Shrine)”를 운영해 온 사실을 강조했다.⁷⁴⁾ 그리하여 유엔이 임명한 안자루트 감독관에게 그 책임의 일부를 계승하는 것은 자국 군대뿐 아니라 유엔의 휘하에 싸워 타국 땅에 잠든 전우들에게 걸맞고 합당한 (fitting and proper) 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⁷⁵⁾

사료에는 1951년부터 유엔묘지를 관리해 온 미군의 변천사항도 명시되어 있다.⁷⁶⁾ 제114영현등록중대(114th Graves Registration Company)는 1951년 1월부터 묘지 건립과 운영을 담당했고, 정전 후 1955년 4월까지 묘지 인근 “글로리 마을(Glory Village)”에서 유엔군과 공산군의 유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점이 주목된다.⁷⁷⁾ 이어서

문에 근거한 것이며, ③"월드(Ward) "대령의 성명은 이하 "워드"로 표기함을 언급해 둔다.

71) UNA, *Op. Cit.*, “Full Text of Col. Ward Pac Commander Speech (March 31, 1960).”

72) UNA, *Op. Cit.*, “(Inclosure 4) Invitations.” Folder Date 1960–1960.

73) UNA, *Op. Cit.*, “Full Text of Col. Ward Pac Commander Speech (March 31, 1960),” p. 1.

74) *Ibid.*, p. 2.

75) *Ibid.*

76) *Ibid.*; 이정선, 앞의 논문, 2020②, 174쪽.

77) *Ibid.*; 이정선, 위의 논문, 174쪽.

142병참대대(142nd Quartermaster Battalion)가 1960년 3월까지 묘지를 운영했다.⁷⁸⁾ 워드 대령은 “신성한 성지(Hallowed Shrine)”를 만들어 나간 미군의 적극적인 참여에 종지부를 찍고 안자루트 감독관에게 묘지를 양도한다며 연설을 마무리했다.⁷⁹⁾

유엔아카이브 현장에서 발굴한 다음 사료는 당시 인수인계식의 양상을 가늠하게 한다.

<그림 4> 워드 대령 연설⁸⁰⁾

<그림 5> 애국가 연주 한, 미⁸¹⁾



이제까지 살펴본 유엔묘지에서 '재한 유엔기념묘지'로의 변천 경위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78) UNA, *Ibid.*

79) *Ibid.*

80) UNA, "AFTER ACTION REPORT UN CEMETERY TRANSFER CEREMONY," *Op. Cit.*, "(Inclosure 3) Pictorial Sequences of Ceremony", 사진의 원 제목은 "COL HENRY P. WARD SUBSTITUTE HOST SPEAKER."

81) *Ibid.* "(Inclosure 3) Pictorial Sequences of Ceremony", 사진의 원제목은 "NATIONAL ANTHEMS."

<표 1> 유엔묘지에서 재한 유엔기념묘지로의 변천과정⁸²⁾

주요일자	주요 내용
1951년 1월 18일	유엔군사령부에서 묘지 건립 결정 및 조성 (4월 초 준공)
1951년 4월 6일	유엔군 전몰장병 위령제 개최
1951년 1월~ 1955년 4월	제114영현등륙중대 중심의 미군 부대가 유엔묘지 조성 및 관리
1955년 4월~ 1960년 3월	제142병참대대 중심의 미군 부대가 묘지 관리 및 운영 담당
1955년 8월 9일	조정환 외무부장관 서리가 유엔묘지를 유엔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서한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
1955년 8월 17일	6·25전쟁 15개 전투병 파병국이 '재한 국제연합기념묘지 설치 및 관리 유지' 건을 유엔에 제안
1955년 11월 15일	'재한 국제연합기념묘지 설치 및 관리 유지'에 관한 대한민국국회 본회의 (제21회 43차 본회의, 성지 표현 생략)
1955년 12월 15일	유엔총회 결의문 제977(X)호 채택
1956년 8월 23일~ 1959년 2월	'재한 국제연합기념묘지의 설치 및 관리 유지에 관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간의 협정' 조항별 교섭
1959년 3월 2일	문로 유엔 특사와 조 외무부장관 간 임시 서명
1959년 11월 6일	함마숄드 유엔 사무총장과 조 외무부장관 간 협정 공식 서명
1959년 12월 1일	협정을 둘러싼 대한민국 국회(제33회 16차 정기회의) 비준 동의 (소유권을 둘러싼 논의)
1959년 12월 11일	유엔 측의 국회 비준 동의 접수 및 협정 발효
1960년 3월 31일	미군(제142병참대대)에서 언커크로의 묘지 인수인계식 개최

82) *Ibid.*; UNA, "Full Text of Col. Ward Pac Commander Speech (March 31, 1960)," *Op. Cit.*, pp. 1-2; 우신구, 앞의 논문, 2013, 170쪽; 대한민국 국회 (1959년 12월 1일), 위의 자료;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1955), A/2939, *Op. Cit.*, pp. 1-4; 『동아일보』(1955년 8월 21일), 앞의 기사 등을 참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다국적 유엔군의 묘지에 유엔의 상징성이 부여되어 가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그리하여 미군이 주축이 되어 관리해 온 유엔묘지가 1955년 15개 전투병 파병국의 제안에 의해 유엔의 공식 기념묘지로 변천하는 경위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실제 협정을 체결하기까지는 대한민국 국회 내부뿐 아니라 기념묘지 위원회와 우리 정부 간의 이견에 따른 세부 조율이 불가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정전 후에도 유엔참전국이 유엔 휘하에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된 유엔군을 적절하고 품위 있는 방식(in a suitable and dignified manner)⁸³⁾”을 통해 결속력을 다지고 영속적으로 기념해 나가려는 공동의지를 실천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오늘날 공원이 지니는 유엔과의 연결고리, 국제적 위상, 법적 근거는 바로 1950년대 중반 이후 유엔기념묘지로의 변용에서 그 시발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유엔묘지 조성 70주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유엔묘지에서 유엔기념묘지로의 변용을 재조명하는 작업은 전쟁유적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남긴 발자취를 재점검하고, 참전국 간 역학 및 유엔과의 관계를 다시금 탐색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나아가 이는 6·25전쟁 분야에서 그동안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군사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는 초석이 되리라 판단된다.

고로 필자가 정리한 것으로, 일부 부대 용어는 사료에 근거하여 해석하였다.

83) United Nations, “Establishment and the Maintenance of the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Op. Cit.*, 1955, p. 467.

4. 맺음말

6·25전쟁기에 건립된 유엔묘지는 1955년 이후 유엔기념묘지로 변용하여 유엔의 유일무이의 묘지로서 의미를 확장해 갔다. 그 과정에서 본 묘지를 둘러싼 유엔참전국 간 기념묘지위원회의 길항과 절충, 협력의 의사결정은 유엔묘지를 유엔의 공적인 신성한 땅으로 승화시키려는 의지의 소산임을 여실히 나타낸다.

연구 시각을 확장하여 살펴보면 ‘유엔묘지’에서 ‘유엔기념묘지’로의 변천이 갖는 의의는, 단지 명칭이나 기능적 변화에 국한되지 않는 법적 자격 부여에 따른 사회적 함의와 변용임이 도출된다. 이는 유엔의 예산 지원과 사용 권한 부여, 전사자와 유족에 대한 상징적 헌사이자 영속적 기념이라는 복합적인 변화를 수반하였다. 게다가 냉전 당시 공산국가의 견제 하에 유엔의 기념묘지 승인이 관철된 사실은 유엔참전국간의 공동 운명체적 대응을 방증한다.

이러한 점에서 유엔군 전사자 거처에 유엔의 대의명분을 부여한 결의문 제977(X)호와 협정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유엔 역사상으로도 이정표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1959년 협정 체결 후 1960년 3월 말에 개최된 언커크의 묘지 인수인계식은 유엔 산하기관이 된 유엔기념묘지의 새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한편 본고는 학계의 폭넓은 문헌 고찰을 통해 협정 체결 과정과 유엔묘지를 둘러싼 배경에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과제를 남긴다. 중요한 것은 이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대한민국과 미 국무부간 정책 문서를 검토하여 유엔군사령부 유치와 관련한 유엔묘지 조성 의도 등 역사적 맥락을 짚어보는 일이다. 그리하여 그 흐름 속에서 유엔묘지가 지니는 위상을 도출해내는 작업이 요구된다. 동시에 묘지의 변용과 연동된 6·25전쟁기의 유엔군 전사자 처리 업무에 관

한 사항도 고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지적하듯 1951년 1월에서 4월 봉헌식에 이르는 유엔묘지의 상세한 조성 경위의 규명 역시 시급한 보완 과제이다.⁸⁴⁾ 이처럼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시기 전후의 연구는 향후 구체화하고자 한다.

반면에 본 논문은 미공개 유엔아카이브 자료를 발굴하여 초기 유엔묘지의 운영 양상과 관리 경위의 일단을 밝히고 그 의미를 재조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 정책 문서를 다각도로 검토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대신 그간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유엔아카이브 사료와 유엔문서, 신문기사 등의 문헌고찰을 통해 묘지 협정 체결에 관한 학술적 고증의 필요성과 성찰을 촉구한 점은 6·25전쟁 연구사의 공백을 메우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해외 아카이브와 협력하여 연구 접점을 도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방법론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유엔아카이브 사료 발굴과 공개는 기존 6·25전쟁 담론을 보완하여 군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일조하리라고 판단된다. 궁극적으로 6·25전쟁의 유적인 유엔묘지 건립 70주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본 논문을 마중물 삼아, 향후 군사적 관점에서 유엔기념공원의 제반 양상을 규명하는 연구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

(원고투고일 : 2021. 4. 8, 심사수정일 : 2021. 5. 13, 게재확정일 : 2021. 5. 28.)

주제어 : 6·25전쟁, 유엔군사령부, 유엔기념공원,
유엔아카이브 기록관리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언커크)

84) 이정선, 앞의 논문, 2020③, 304쪽.

<참고문헌>

1. 1차 사료

외무부(국가기록원 자료), "재한국 국제연합기념묘지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간의 협정(외무부 가역, 1959)"
국회사무처, "국회입시회의 속기록"(제21회 제43차 국회 본 회의록, 1955년 11월 15일)

_____, "國際聯合記念墓地의設置및維持에關한大韓民國과國際聯合間의協定에關한批准同意的件"(第三十三回 第十六號(第十六次會議) 國會定期會議速記錄, 檀紀四二九二年 十二月 一日)

외교통상부,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재한국 국제연합기념 묘지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한 한·국제연합간의 협정』 v.1 체결교, 1955-57 (59-074)

_____,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재한국 국제연합기념 묘지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한 한·국제연합간의 협정』 v.2. 체결교섭, 1958-59.3 (59-075)

_____,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재한국 국제연합기념 묘지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한 한·국제연합간의 협정』 v.3. 체결철, 1959.4-60.3 (59-076)

Library and Archives Canada (LAC), RG25: Department of External Affairs Fonds (R219-0-2-E), ACA001_01_01C0037, [U.N. Cemetery in Korea, Part 2, 1955/08/01-1965/03/31 (File 7-3-3-5)], "UNITEDNATIONS (sic) MEMORIAL CEMETERY IN KOREA --ADVISORY COMMITTEE MEETING JUN22/56 (FM PERMANENT MISSION NEWYORK JUN25/56 UNCLAS)", 1956.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Electronic resource.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2005), RG 92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Quartermaster General; (Copies

of Unclassified Documents Relating to the QM Corps in the Korean War, 1948–52; Series), Graves Registration thru Brig. Gen. Hastings Folder(1)/ Office of the Quartermaster General, “HISTORICAL REPORT–HEADQUARTERS, AMERICAN GRAVES REGISTRATION SERVICE GROUP, 8204th ARMY UNIT APO 3 (Period of Operation 2 January 1951– 15 March 1956), (Graves registration in the Korean conflict(Quartermaster review, March–April, 1953)”, John C. Cook, QMC, 1953.

United Nations, “Establishment and the Maintenance of the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No.977(X)], 1955.

_____, “Establishment and the Maintenance of the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No.977(X)], Tenth Session; 557th plenary meeting, 15 December 1955.

_____, *The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New York: UN, 1956.

_____, *The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New York: UN, 1957.

_____, *The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New York: UN, 1958.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port of the 5th Committee”(A/3096), 14 December 1955.

_____, “SUPPLEMENTARY LIST OF ITEMS FOR THE AGENDA OF THE TENTH REGULAR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ITEM PROPOSED BY AUSTRALIA, BELGIUM, CANADA, COLOMBIA, ETHIOPIA, FRANCE, GREECE, THE NETHERLANDS, NEW ZEALAND, THE PHILIPPINES,

THE UNION OF SOUTH AFRICA, THAILAND, TURKEY,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A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A/2939), 22 August 1955.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Letter dated 17 August 1955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by the Permanent Representatives of Australia, Belgium, Canada, Colombia, Ethiopia, France, Greece, the Netherlands, New Zealand, the Philippines, the Union of South Africa, Thailand, Turkey,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the United Nations” (A/2939/Corr.1), New York: UN, 25 August 1955.

_____ , “10th session: 530th plenary meeting” (A/PV.530), 30 September 1955.

_____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conclusion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a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A/4330), 4 December 1959.

United Nations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Section (UNA), Folder Reference No. S-0690-0005-01, Folder Date 1960-1960, [Organization - Transfer of the Cemetary (sic) from the 142nd Quartermaster Battalion of the United Kingdom to UNCURK], “Transfer Ceremony United Nations Cemetary(sic)”, “(Inclosure#1) Layout of Cemetary(sic) Site”, 15 March 1960.

United Nations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Section (UNA), Folder Reference No. S-0690-0005-01, Folder Date 1960-1960, [Organization - Transfer of the Cemetary (sic) from the 142nd Quartermaster Battalion of the United Kingdom to UNCURK], “Full Text of Col. Ward Pac Commander Speech (March 31, 1960)”, “After Action Report UN Cemetery Transfer Ceremony, 31 March 1960”, 20 April 1960, “(Inclosure 3) Pictorial Sequences of Ceremony [COL HENRY P. WARD SUBSTITUTE HOST SPEAKER], [NATIONAL ANTHEM]”, “(Inclosure 4) Invitations”, “(Inclosure 5) Program Handout”, “(Inclosure 6) “A”-Frame News (Pusan Area Command APO 59), Vol. VI., No. 8, April 18, 1960”.

2. 2차 사료

- 강인철, 『전쟁과 희생: 한국의 전사자 숭배』, 고양: 역사비평사, 2019, <http://uci.or.kr//G901:A-0009292111>
- 김선미, 「제한 유엔기념공원의 조성 경위와 관리의 성격」 민주주의사회연구소 (편), 『(국제평화도시의 환상을 넘어) 유엔기념공원과 부산』, 서울: 선인, 2013, <http://uci.or.kr//G901:A-0006453805>
- 우신구, 「유엔기념공원의 형성과정과 공간구조」 민주주의사회연구소편, 『(국제평화도시의 환상을 넘어) 유엔기념공원과 부산』, 서울: 선인, 2013. <http://uci.or.kr//G901:A-0006453805>
- 이동원, 「1952~1955년, 한국후방관구사령부(Kcomz)의 창설과 해체」, 『군사』 91(2014.6): 33-62, <https://doi.org/10.29212/mh.2014..91.33>
- 이석조, 『젊은 영혼들과 함께 한) 천일간의 백서: 제한유엔기념공원』, 부산: 다산, 2008.
- 이정선,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전략에 관한 연구 -일본 근대

- 문화유산 사례 고찰을 통한 시론적 탐색-」, 『인문사회과학연구』 21(1) (2020.2); 295-323,
<https://doi.org/10.15818/ihss.2020.21.1.295>
- _____,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유엔기념공원의 유산 해석 전략 연구: 벨기에, 프랑스의 ‘제1차 세계대전의 장례와 추모 유산’ 사례를 참고로」, 『문화정책논총』 34(1)(2020.4);159-186,
<https://doi.org/10.16937/jcp.2020.34.1.159>
- _____, 「한국전쟁기 유엔묘지에는 왜 미군 전사자가 안장되지 않았는가-미군 전사자 유해의 전시 중 동시 송환정책과 일본 고쿠라(小倉)에서의 신원확인을 중심으로-」, 『항도부산』 40(2020. 8); 281-310,
<https://doi.org/10.19169/hd.2020.8.40.281>
- 전재일, 『헤이든 화이트의 서사적 관점으로 본 부산근대문화유산의 가치에 관한 고찰-부산항 제 1부두와 재한유엔기념공원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부산: 동아대학교 대학원, 2020,
<http://uci.or.kr/I804:21008-200000281042>
- 정성운, 「유엔기념공원의 중층적 정체성과 구조적 문제점-묘역의 공간구성과 의미구조를 중심으로-」, 『항도부산』 38(2019.8); 285-323,
<http://doi.org/10.19169/hd.2019.8.38.285>
- 조성훈, 「부산 서독 적십자병원의 활동 성과와 기억」,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5(2020.12); 325-360,<https://dx.doi.org/10.19162/kNM.105.2020.12.08>
- 조지 L. 모스, 『전사자 숭배: 국가라는 종교의 희생제물』 (오윤성 역). 파주: 문학동네, 2015, <http://uci.or.kr/G901:A-0006540310>
- Lee, C., "Other Spaces: Exploring Kyushu as 'Heterotopia for Humanity' in Japan's Korean War,"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Science and Humanity* 10 (4) (2020. 11); 119-126,
<http://doi.org/10.18178/ijssh.2020.V10.1026>
- _____, "Moment to be one': Senses of Place in The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in Dominique

Vanneste & Wesley Gruijthuijsen (eds.), *Value of Heritage for Tourism*, Leuven: University of Leuven, 2020.
<https://ees.kuleuven.be/unitwin2019/proceedings/>

3. 신문 및 인터넷 자료

『동아일보』. (1955.8.21.). “釜山郊外에 유엔墓地設置 韓國參戰十五個國
代表가 提案”

『동아일보』. (1955.10.2.). “韓國에 『유엔』 墓地 UN總會서設置案上程”

『경향신문』. (1959.2.24.). “曹長官과 歡談 滯韓中인 「문로」 卿”

『동아일보』. (1959.3.2.). “유엔 墓地管理協定에假調印 二日, 曹外務·
『문로』 卿間”

『동아일보』. (1959.11.5.). “六日에 調印키로 韓國·『유엔』 墓地協定”

『동아일보』. (1959.11.8.). “유엔墓地協定 曹外務함總長調印”

『동아일보』. (1959.11.15.). “『유엔』 墓地協定調印光景”

『조선일보』. (1973.11.30.). “언커크 解體聲明”

『국방일보』. (2018.6.24.). “독일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키로”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180625/7/
BBSMSTR_000000010021/view.do](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180625/7/BBSMSTR_000000010021/view.do)

국사편찬위원회 디지털 아카이브, (접속일 2021년 4월 3일),
<http://archive.history.go.kr>

사이버 유엔기념공원, “역사”, (접속일 2021년 3월 25일),
https://www.unmck.or.kr/kor_un_01_1.php,

_____, “안장자 및 전사자 현황”(접속일 2021년 3월 25일),
https://www.unmck.or.kr/kor_un_01_4.php

전대길, “[전대길의 CEO칼럼] 아브라함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문”
『아웃소싱타임즈』(2019년 8월 21일),(접속일 2021년 3월 20일),
[https://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
?idxno=85582](https://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582)

(Abstract)

A Study on the Transition from the United Nations Cemetery
to the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 Centered on the Period from 1955 to 1960 -

Lee, Chung-sun

Follow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outbreak in 2020, the year of 2021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establishing the United Nations (UN) Cemetery in 1951. In light of these two significant milestones, this thesis examines the transition period from the UN Cemetery to the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UNMCK), mainly focusing from 1955 to 1960.

The study researches the historical process from the adoption of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977(X) (Resolution 977(X)) in 1955 to the signing of the “Agreement with the United Nations and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the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Agreement)” in 1959. Also, the research scrutinizes the aspects of the transfer ceremony from the UN Command to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UNCURK) of taking over the UNMCK in March 1960, which remain unexplored in the existing literature.

Expanding its meaning as the UN's symbolic milieu,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contention, compromise, and cooperation among the UN allied nations during the Korean War demonstrates a collective response of common destiny in the period of Cold War. In this regard, Resolution 977(X) and the Agreement, which provide the cause for the burial ground of the fallen soldiers fought under the UN Command, can be understood as significant milestones in the history of both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

Moreover, the study suggests that we should correct the misinformation regarding the management and signing of the UNMCK by analyzing the historical papers of the United Nations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Section (UNA), UN materials, and newspaper articles. In particular, the UN archival documents, which are the first materials to be released, are expected to expand the scope of existing military research by filling the gap in academic discourse on the Korean War and the UN.

Keywords : The Korean War, United Nations Command,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UNMCK),
United Nations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Section
(UNA),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UNCURK)